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8호(2014.10.0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호(2015.03.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2018.12.0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검사 수수료) 시험·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목장형 유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생산한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수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호, 2015.3.12.)를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호, 2015. 3.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8호, 2014. 10. 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호)
2.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13호)

제3조(축산물 검사의뢰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후의 축산물 검사의뢰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종전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시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00호, 2018. 12. 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2018년 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0년 1월 1일

나. 2018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20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0년 7월 1일

다. 2018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5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1년 1월 1일

라. 2018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1년 7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 (제2조 관련)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공통)

구 분	수수료(원)
1)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 대장균, 진균수(1항목당)	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43,600
(3) 식중독균 검사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29,000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1항목당)	64,900
③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n=5)(1항목당)	47,700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5)(1항목당)	40,200
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	46,500
⑥ 크로노박터(n=5)	38,300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52,800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	225,700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	36,100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정량검사, n=5)	143,900
⑪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n=5)	65,000
(4) 세균발육 시험	27,000
2) 바이러스학적 검사	
(1)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EIA)	47,000
(2)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RIA)	53,300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EIA)	68,000

구 분	수수료(원)
(4) C형간염항체(Anti-HCV) 검사(EIA)	54,700
(5) 항바이러스활성시험(항 HIV 활성시험)	110,800
(6) 노로바이러스	317,600

2. 소독 약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살충제 감수성시험	58,700
2) 살충제 실내효력시험	52,200
3) 살충제 잔류효과시험	61,300
4) 야외효력 평가시험	64,600

3. 의약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	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함
2) 수출용 제제	
(1) 수출인삼제제 검정	해당 시험항목에 준하여 산정
(2) 수출용혈장분획제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에 따름
3) 항생물질제제(화학적, 생물학적)의 역가시험(1시험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30,100
5) 안전성시험	20,800
6) 무균시험	
(1) 직접법	52,000

구 분	수수료(원)
(2) 멤브레인필터법	140,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27,000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200
(2) 기기분석	46,400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67,800
11) 아미노산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5,000
12)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28,000
13) 복합아미노산제제(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의 정량시험	109,300
14) 비타민제시험	
(1) 확인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3) 생물학적 정량시험	25,000
15) 붕해시험	4,500
16)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1) 정성시험(1성분당)	7,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3) 미지성분 시험(1성분당)	45,000
17) 수분시험(칼피셧법)	20,000
18) 주사제유리용기	
(1) 무색	3,500
(2) 착색	9,000
19) 수액용고무마개시험	159,500

구 분	수수료(원)
20)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1) PE 또는 PP시험	82,000
(2) PVC시험	120,000
21)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	533,000
22) 효소제시험(1항목당)	59,800
23) 호르몬제제시험(1성분당)	
(1) 정성시험	5,000
(2) 정량시험	28,000
24)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1) 기지성분 정성시험	5,000
(2) 미지성분 정성시험	28,000
(3) 정량시험	28,000
25) 함량균일성시험	30,000
26) 용출시험(1성분당)	30,000
27) 순도시험(1항목당)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000
(2) 기기분석	46,000
28)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1시험당)	5,100
29) 불용성이물시험	1,300
30)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 (1시험당)	2,500
31) 융점시험, 제산력시험, 흡착력시험(1시험당)	10,200
32)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1시험당)	11,000
33) 미생물한도시험	232,000
34) 항원성시험	178,700

구 분	수수료(원)
35) 급성독성시험	53,100
36)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 (1시험당)	3,500
37) 흡광도시험	14,000
38) 유연물질시험	28,000
39) 히스타민시험	41,200
40) 이식시험	40,500
41) 알코올수시험	8,200
42) 회분시험	7,700
43) 건조감량시험	2,800
44) 피내반응시험	78,500
45) 용혈성시험	21,500
46) 산불용성회분시험	11,900
47) 엑스함량시험	5,800
48) 보존제시험(1성분당)	32,000
49) 엔도톡신시험	89,700
50) 세포독성시험	30,000
51)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	402,500
52)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	517,000
53) 엘카토닌 함량시험	214,500
54) 중금속	
① 비색법	15,300
② 기기분석	46,900
55) 잔류농약(유기염소제)	330,600
56) 정유함량	17,500

구 분	수수료(원)
57) 표백제시험	33,200
58) 검경법에 의한 성상시험	13,400
59) 벤조피렌	122,000
6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61)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4. 화장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정성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	21,500
4) 납	11,700
5) 녹농균	18,600
6) 디옥산	21,800
7) 안티몬	16,900
8) 메탄올	26,400
9) 카드뮴	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	28,800
11) 프탈레이트	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5. 의료기기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방사선조사시험	
(1) 베타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60,300
(2) 감마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36,000
(3) 엑스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52,200
(4) 방사능오염시험	119,500
2) 생물학적시험	
(1) 세포독성시험	30,000
(2) 무균시험	
① 직접법	52,000
② 멤브레인필터법	140,000
(3) 급성독성시험	53,100
(4) 이식시험	40,500
(5) 용혈성시험	21,500
(6) 발열성시험	30,100
(7) 피내반응시험	78,500
(8) 자극성시험(안자극시험)	32,300
3)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1) 누설전류시험	26,400
(2) 내전압시험	29,000

구 분	수수료(원)
(3) 접지저항시험	25,500
(4) 과열시험	40,500
(5) 전원입력시험	24,000
(6) 전압 및 에너지 제한시험	25,500
(7) 내충격시험	30,100
4) 방사선안전에 관한 시험	
(1) 누설엑스선의 제한시험	38,900
(2) 반가층시험	35,400
(3) 피검자와 수상면간 기구 및 재료의 알루미늄 당량시험	36,300
(4) 1차선방어벽의 이용선제한시험	36,300
(5) 투시촬영장치 주변으로부터의 산란선방어시험	36,300
(6) 입사조사선량율의 제한시험	36,300
(7) 엑스선조사야조절기구시험	36,300
(8) 엑스선조사선량의 허용차시험	33,900
(9)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33,900
(10) 엑스선기계장치의 성능시험	36,300
(11) 균일성시험	30,400
(12) 인장강도시험, 신장도시험, 영구신장시험, 인열강도시험(1시험당)	14,500
(13) 납당량시험	47,800
(14) 의료용필름판독기의 밝기 시험	3,000
(15) 누광시험	10,600
(16) 밀착시험, 그리드밀도시험, 그리드비시험(1시험당)	7,100
(17) 집속거리시험, 사용거리한계시험, 1차 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 산란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1시험당)	5,400
(18) 엑스선 불투과성시험	6,900

구 분	수수료(원)
5)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6.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1) 수술용	35,000
(2) 보건용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5,200
6) 가아제	45,000
7) 붕대	40,000
8) 탈지면	50,000
9) 반창고	43,200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	15,000
11) 스터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45,000

구 분	수수료(원)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7,800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7.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일반시험법	
(1) 이물	10,000
(2) 기생충 및 그 알	37,800
(3) 내용량	8,600
(4) 진공도	3,900
(5) 붕해시험	7,700
(6) 곰팡이수	16,100
(7) 피·에이치(pH)	8,600
2) 성분시험법	
(1) 수분	
① 건조감량법	7,100
② 칼피셔법	16,500
(2) 회분(조회분)	8,600
(3) 질소화합물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26,000

구 분	수수료(원)
② 아미노산질소	39,800
③ 히드록시프롤린	123,600
(4) 탄수화물	
① 환원당	37,000
② 자당	36,300
③ 당도(당도측정법)	9,300
④ 조섬유	26,000
⑤ 식이섬유	58,500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37,000
(5) 지질	
① 조지방	26,000
② 비중	2,500
③ 굴절률	5,900
④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17,400
⑤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56,5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⑥ 콜레스테롤	53,000
(6) 무기질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46,000

구 분	수수료(원)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비타민류	
① 비타민 A	117,200
② 비타민 B1	67,300
③ 비타민 B2	92,900
④ 비타민 C	60,000
⑤ 나이아신	80,100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55,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첨가물시험법	
(1) 보존료	
①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동시분석법)	43,000
②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43,000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34,6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산화방지제	60,600
(4) 착색료(타르색소)	
① 정성시험	40,700
② 정량시험	70,100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시험법(동시분석법)	11,900
(6)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구 분	수수료(원)
4) 원유 시험법	
(1) 유지방	120
(2) 세균수	720
(3) 체세포수 검사법	120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1) 식용얼음	
① 염소이온	8,600
② 질산성질소	15,000
③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2) 당류	
①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77,400
② 포도당당량	13,800
③ 덱스트린분	14,200
④ 과당	50,100
⑤ 총당	37,000
⑥ 비선광도	5,500
⑦ 유당	37,000
(3) 식용유지류	
① 냉각시험	20,300
(4) 음료류	
① 가스압	3,000
② 인삼·홍삼성분	35,000
(5) 특수용도식품	
① 열량	92,000

구 분	수수료(원)
② α-리놀렌산	53,000
③ 알파(α)화도	14,300
(6) 조미식품	
① 총산	11,000
② 위화물	26,000
③ 총염소	14,600
④ 불용분	9,900
⑤ 황산이온	14,000
⑥ 사분	8,600
⑦ 페로시안화이온	22,900
⑧ 산불용성회분	12,400
⑨ 염화나트륨	11,100
(7) 주류	
①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1항목당)	23,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에탄올	26,000
③ 증발잔류물	15,700
(8) 농산가공식품류	
① α-아밀라아제	42,000
② 프로테아제	42,000
(9) 식육 및 알가공품	
① 휘발성염기질소	14,300
(10) 유가공품	
① 비중	2,500

구 분	수수료(원)
② 산도	10,200
③ 유지방(Gerber법)	26,000
④ 포스파타제	12,000
⑤ 지방의 낙산가	21,400
⑥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9,000
(11) 수산물가공식품	
① 열탕불용해잔사물	9,500
② 붕산	35,600
③ 일산화탄소	53,400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① 물불용물	11,700
② 전화당	60,600
③ 자당	36,300
④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36,900
⑤ 이성화당	29,800
⑥ 탄소동위원소비율	52,100
⑦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6) 잔류농약분석법	
(1) 식품(인삼 포함)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②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③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② 다성분 분석법 및 ③ 단성분	

구 분	수수료(원)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축산물	
① 다성분 분석법	278,400
②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① 다성분 분석법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② 단성분 분석법의 시험수수료(1항목당)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성분 분석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7)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8) 유해물질	
(1) 중금속	
①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수은	35,200

구 분	수수료(원)
③ 메틸수은	70,000
④ 중금속(비색법)	14,700
(2) 곰팡이독소	
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87,000
② 아플라톡신 M1	87,000
③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87,000
④ 오크라톡신 A	128,000
(3) 다이옥신(정량검사)	2,600,000
(4) 벤조피렌	122,000
(5) 3-MCPD	80,900
(6) 방사능	80,000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74,000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①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②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③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2)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11)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135,500
12) 기타(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8. 건강기능식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일반시험법	
(1) 내용량	2,300
(2) 입도	8,600
(3) 산도	8,800
(4) 유해물질시험법	
① 시안화합물	36,000
② 카페인	56,300
③ 디에틸렌글리콜	24,900
2) 개별성분시험법	
(1) 베타카로틴	70,300
(2) 글루코사민	42,000
(3)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1항목당)	68,000
(4) 콘드로이친황산	42,000
(5) 키토올리고당	42,000
(6)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루스산 등)(1항목당)	56,500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인지질	36,000
(8)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42,000
(9) 스쿠알렌	53,000
(10) 알콕시글리세롤	36,000
(11) 옥타코사놀	53,000
(12)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구 분	수수료(원)
(13) 루테인	71,500
(14) 카테킨	73,900
(15) 안트라퀴논계화합물	42,000
(16) 총 플라보노이드	42,000
(17) 파라(p)-쿠마르산 및 계피산	34,700
(18) 진세노사이드	76,600
(19) 총 엽록소	42,000
(20) 총 페오포르바이드	46,600
(21) 유산간·구균	22,700
(22) 비피더스균	56,300
(23)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75,000
(24) 효모수	23,300
(25) α-아밀라아제	42,000
(26) 프로테아제	42,000
(27) 플라보놀 배당체	110,700
(28) 깅콜릭산	217,000
(29) 엠에스엠	82,300
(30) 히알루론산	52,300
(31) 기타(1항목당)	
① 기기분석	30,000
②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9.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4) 건조감량시험	6,100
5) 강열잔류물시험	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2,800
7) 정량법(색가)	10,300
8) 활성시험법(역가)	32,000
9) 매운맛	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	10,600
11) 잔류용매	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75,100
13) 환원당	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1) 중화제 선정시험	522,700
(2) 살균소독력시험	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	6,000
(2) 기기분석	32,000
(3)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0.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페놀시험	37,300
3) 색소시험	9,200
4) 형광증백제시험	12,100
5) 염화비닐	61,500
6) 납 및 카드뮴	45,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97,1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81,200
9) 휘발성물질	38,9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1) 바륨	39,300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59,5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63,400
14) 아민류	33,500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17) 안티몬	29,800
18) 게르마늄	34,000
19) 포름알데히드	52,3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28,300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34,700
22) 멜라민	45,100
23) 이소시아네이트	31,500
24) 아크릴로니트릴	64,500

구 분	수수료(원)
25) 2-머캅토이미다졸	53,900
26) PCBs	114,800
27)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	65,000
29) 열 충격 강도	5,700
30) 1,3-부타디엔	48,300
31) 1,4-부탄디올	55,000
32) 1-옥텐 및 1-헥센	36,800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51,800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64,400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33,700
36) 수은	15,100
37) 6가크롬	33,200
38) 니켈	25,700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124,900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85,600
41) 비닐아세테이트	24,800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84,700
43) 아세트알데히드	24,800

구 분	수수료(원)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97,600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2,300
46) 이산화황	13,300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55,900
48)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1.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중금속 시험	36,000
2) 형광증백제시험	13,300
3) 피·에이치(pH)시험	8,6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700
7) 수분	8,000
8) 납 및 카드뮴	45,000
9)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0) 페놀	27,000
11) 포름알데히드	52,300
12) 허용외 타르색소	14,400

구 분	수수료(원)
13) 면체와 축의 거리	1,000
14) 축간 거리	1,000
15)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5,100
16) 축의 강도	5,100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	45,100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43,600
19) 아조염료	126,400
2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7,300
21) 유해원소 용출	87,500
22) 유해원소 함유량	35,000
23)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비 고

1.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검사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수입축산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입식육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및 그 부산물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나. 사슴고기(부산물 포함)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다. 말고기(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라. 기타식육(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5. 검체채취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검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1개의 검체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시험·검사성적서 등 재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1통당 수수료(원)
1. 시험·검사성적서	500
2. 시험·검사성적서 외국어 번역문	1,000